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 민 사 부

결 정

사 전 2006나20183 손해배상(기)

주위적 원고, 피항소인

1. 김상조 [REDACTED]

서울 [REDACTED]

2. 송호창 [REDACTED]

과천시 [REDACTED]

3. 김현수 [REDACTED]

안양시 [REDACTED]

4. 이은정 [REDACTED]

서울 [REDACTED]

주위적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위대영

예비적 원고, 피항소인

1. 김기식 [REDACTED]

고양시 [REDACTED]

2. 명광복 [REDACTED]

서울 [REDACTED]



예비적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위대영

피고, 항소인

1. 삼성전자 주식회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대표이사 이진희, 이윤우, 윤종용, 이학수, 최도석

2. 윤종용

서울 [REDACTE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근

제1삼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6. 선고 2004가단65211 판결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결정 사항

1. 피고 윤종용은 2004. 2. 27. 개최된 제35기 피고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의 정기주주총회 의장으로서, 위 주주총회의 진행 중에 주위적 원고들이 피고회사측 진행요원들에 의하여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 당한 부분과 관련하여, 위 진행요원들에게 미리 충분하고 적절한 사전지시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주위적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유감과 위로의 뜻을 표시하며, 피고회사는 향후 주주총회에서 의장의 지시 없이는 친행요원들이 주주 및 주주의 대리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미리 적절한 사전

지시를 한다.

2. 피고 윤종용은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장으로서 위 주주총회를 진행함에 있어 일시적, 우발적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 주주 또는 주주의 대리인인 주위적 및 예비적 원고들에게 주주총회의 안전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발언에 대하여 이를 표명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 만한 의사진행을 한 점에 대하여 주위적 및 예비적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정본의 송달로써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한편 피고회사는 향후 주주총회를 진행함에 있어 상법과 상장회사 표준주주총회의 운영규정, 그리고 집단적인 회의체의 운영에 있어서의 의사진행의 일반원칙을 따르고, 주주들 상호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최대한 보장한다.
3. 피고회사는 주위적 및 예비적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송에 소요된 제반 비용에 대한 보상 명목 등으로 함께 10,000,000원을 2007. 11. 16.까지 지급하되, 만일 피고회사가 위 금액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주위적 및 예비적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5.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주위적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사

전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1) 주위적 원고들에게 각 7,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2) 예비적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예비적 원고들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07. 9. 18.

재판장 판사 이성철



 판사 유효영



 판사 홍예연



※ 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